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74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47425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31379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감덕령, 김지영, 전승환, 홍성용, 정철섭, 오두환, 최대호

판결 선고 2022. 6. 30.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7나3137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1.

가. 자금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하지 않고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등 참조).

종합통장자동대출에서는 은행이 대출약정에서 정하여진 한도로 채무자의 약정계좌로 신용을 공여한 후 채무자가 잔고를 초과하여 약정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잔고를 초과한 금원 부분에 한하여 자동적으로 대출이 실행되고 그 약정계좌에 다시 금원을 입금하는 경우 그만큼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207972 판결 등 참조). 종합통장자동대출의 약정계좌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계좌인 경우에 그 예금계좌로 송금의뢰인이 자금이체를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다만 약정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지되는 상태, 즉 대출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약정계좌로 자금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함과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수취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수취인은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설령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없더라도,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이체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고,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원고가 2016. 12. 12. 착오로 원고의 주식회사 C 예금계좌에서 D의 피고 예금계좌로 4차례에 걸쳐 합계 87,302,2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D에 대한 51,071,519원 상당의

기존 대출금 채권을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대등액으로 상계처리한 사실 등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송금의뢰인인 원고가 수취인인 D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 원고와 D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D과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송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에 따라 D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 상계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오경미

대법관박정화

주심대법관김선수

대법관노태악